제1축: 자산의 법적 성질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스위스법은 입법과 학설을 통해 답에 도달했습니다.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스위스 민법(CC; ZGB) 제641조 이하의 물건(Sache)이 아닙니다. 특정 가능한 채무자에 대한 의무를 표창하지 않는 한 채권도 아닙니다. 보유자가 가진 것은 개인키의 통제에 근거한 사실상의 처분권입니다. 연방평의회는 2018년 12월 14일 보고서에서 이 분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재산 범주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2020년 DLT법은 두 개의 구체적인 다리를 놓았습니다. 스위스 채무법(CO; OR) 제973d조 이하의 원장 기반 증권은 권리를 표창하는 토큰을 위한 것입니다.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SchKG) 제242a조와 제242b조는 파산 시 가상자산의 분리를 규정합니다.[1] 그 결과는 이원적 체계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순수한 지급형 토큰은 점유와 유사한 통제, 파산 시 분리, 부당이득법을 통해 보호됩니다. 권리를 표창하는 토큰은 원장 기반 증권의 형식을 갖출 수 있으며, 그러면 선의취득을 포함하여 채무법 제973e조부터 제973g조까지의 유가증권 보호를 온전히 누립니다.

싱가포르는 판례를 통해 비슷한 입장에 도달했습니다.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Quoine Pte Ltd v B2C2 Ltd*에서 재산권 문제를 열어 두면서도, 상소의 목적상 토큰이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2] 고등법원(High Court)은 *CLM v CLN*에서 도난당한 비트코인과 이더에 대해 물권적 금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이 재산에 관한 *Ainsworth* 표지를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3] 결정적인 단계는 *ByBit Fintech Ltd v Ho Kai Xin*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USDT가 권리물(thing in action)이므로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발행인에 대해 집행 가능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권리물(chose in action)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4] 따라서 싱가포르는 이를 정한 법률 없이도 신탁, 추급, 금지명령의 목적상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실무상 차이는 확실성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스위스에서 토큰화된 주식의 보유자는 채무법 제973d조로부터 어떤 등록 약정과 어떤 원장 요건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매수인은 채무법 제973e조 제3항에 따라 선의취득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토큰화된 주식은 회사법(Companies Act 1967)상 여전히 주식이며, 토큰은 주주명부 기재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토큰 자체의 재산적 지위는 *ByBit*에 근거합니다. 순수한 지급형 토큰의 경우에는 입장이 뒤바뀝니다. 싱가포르의 재산 성질결정은 보유자에게 신탁과 추급이라는 구제수단을 주지만, 스위스법은 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와 채무법 제62조 이하라는 더 번거로운 경로를 통해서만 이를 제공합니다.[5]

질문	스위스	싱가포르
규칙의 연원	2018년 연방평의회 보고서. 2020년 DLT법(채무법, 채무추심 및 파산법)	판례: Quoine(2020), CLM v CLN(2022), ByBit(2023)
순수한 지급형 토큰	물건이 아님. 사실상의 처분권. 선의취득 없음	재산(권리물).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권리를 표창하는 토큰	등록 약정과 원장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법 제973d조 이하의 원장 기반 증권	기초 권리(주식, 채권, 지분)는 각 근거 법률이 규율. 토큰은 기록 또는 증거
선의취득	원장 기반 증권은 인정(채무법 제973e조 제3항). 지급형 토큰은 불인정	권리물에 대해 형평법상 항변(유상의 선의 매수인)이 적용됨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질문	스위스	싱가포르
토큰에 대한 신탁	헤이그 신탁협약과 PILA 제149a조 이하를 통해서만. 국내 신탁 제도 없음	명시신탁, 복귀신탁, 의제신탁 모두 가능
개인키 분실	자산 상실. 재생성할 법적 장치 없음	자산 상실. 법원이 통제를 회복시킬 수 없음
2026년 6월 30일 현재 미해결 쟁점	지급형 토큰도 원장 기반 증권도 아닌 토큰(거버넌스 토큰, LP 토큰)의 취급	싱가포르가 법률로 '제3의 범주'를 도입할지 여부. 오프체인 콘텐츠가 있는 NFT의 지위

고객 질문

"저희는 추크 주식회사(AG)가 발행한 토큰화 채권과 싱가포르 거래소에 있는 USD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 이 중 무엇이 '저희 것'입니까?" 발행인의 조건에 채무법 제973d조가 요구하는 등록 약정이 들어 있다면, 토큰화 채권은 원장 기반 증권입니다. 그러면 귀사는 원장에서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하며 선의취득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USDC는, 거래소가 약관과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의 법정 신탁 요건에 따라 이를 신탁으로 보유한다면, 싱가포르법상 형평법적으로 귀사에 귀속되는 권리물입니다. 반대로 약관이 거래소를 귀사의 채무자로 정하고 있다면, 귀사는 거래소에 대한 채권을 가질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법을 읽기 전에 약관을 읽으십시오.

주

1. 연방평의회, 2018년 12월 14일 보고서 "Legal framework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blockchain in Switzerland"; Federal Act on the Adaptation of Federal Law to Developments in Distributed Electronic Register Technology of 25 September 2020, 2021년 2월 1일 및 8월 1일 시행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AS 2021 33 및 AS 2021 400). 사법(私法)상 분석은 제D편 제I장부터 제III장까지에서 다룹니다. ↩

2. Quoine Pte Ltd v B2C2 Ltd [2020] SGCA(I) 02, [144]. 이 판결은 제J편 제I장에서 분석합니다. ↩

3. CLM v CLN and others [2022] SGHC 46. ↩

4. ByBit Fintech Ltd v Ho Kai Xin and others [2023] SGHC 199, [27]–[36]. 법원은 잉글랜드·웨일스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 of England and Wales)의 '제3의 범주' 분석을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싱가포르법이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 그러한 범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5. 잘못된 이전에 대한 스위스의 구제수단은 제D편 제II장 참조; 싱가포르의 추급과 의제신탁은 제J편 제IV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